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정선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5, 12, 7

運營委員會專門委員 金基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115호로 2015년 12월 1일 정선희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강화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취하고자 별지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관 런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별지 제1호 서식(공인대장)의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변경
- 나.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 (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)
 - 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
 - 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」
- 다.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- 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개정됨에 따라, 그 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.
- 주민등록번호를 처리1) 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,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」를 개정(주민등록번호⇒생년월일) 하고, 동일내용의 다른 조례도 부칙에서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^{1) &}lt;u>"처리"란</u>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참 고 자 료

1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-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2. <u>"처리"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</u> <u>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</u>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3.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